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872
----------	------

2020. 09. 08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85번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전석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5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로부터 현물출자 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‘공영주차장(도시계획시설)’의 운영(위탁포함)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

안 제44조의 제목과 본문을 각각 ‘과태료 부과·징수 등’과 ‘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’로 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공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을 포함하도록 안 제21조제1항제20호를 신설함.
- 제44조의 제목 “과태료”를 “과태료 부과·징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

제44조의 제목 중 “과태료”를 “과태료 부과·징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단서의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 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</p> <p>1. ~ 19. 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0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p> <p>제44조(<u>과태료</u>)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----- -----.</p>	<p>제21조 (사업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</u></p> <p><u>21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u></p> <p>제44조(<u>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</u>)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. ----- ----- <u>부과</u> <u>징수 및 이의제기</u>----- -----.</p>